

2018. 3. 27.(화)

한국인의 본향 **고창**

이 장 회 의 자 료



고 창 읍



고창읍

회 보

제2018-05호
2018. 03.27.

한국인의 본향 **고창**

- 회보는 공문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일반문서입니다.
- 회보는 내용에 따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이장은 주민에게 홍보하고 열람시켜야 합니다.

주요 당면 업무

<p>총무팀 (☎ 560-81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자치권 확립을 위한 고창군 해상경계 획정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 추진현황 ○ 사랑의 그린PC 보급 신청 접수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법 준수 ○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및 사용안내 ○ 마을번호사 제도 이용방법 안내 ○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신고접수 ○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홍보 ○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홍보 ○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 ○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안내 및 홍보물 배부 ○ 2018년 주민정보화교육 일정
<p>주민복지팀 (☎ 560-81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홍보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할인 지원 신청 ○ 서남권 추모공원 이용 안내
<p>맞춤형복지팀 (☎ 560-8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행복 상담실 운영 협조 ○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및 추진 ○ 고창읍 복지허브화 활성화를 위한 연합모금 참여 협조
<p>민원팀 (☎ 560-81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산업경제팀 (☎ 560-81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쌀·밭 직불제 신청 접수 ○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안내 ○ 봄철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방송 추진 협조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 제15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홍보 ○ 2018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홍보 ○ 2018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홍보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 안내 ○ 2018년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 2018년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홍보 ○ 2019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 2018년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홍보 ○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홍보 ○ 2017년 쌀·밭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안내 ○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안내 ○ 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기간 운영 안내 및 홍보 협조 ○ 육묘업 등록제 홍보 ○ 농기계 안전관리 요령 홍보
<p>건설도시팀 (☎ 560-81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군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에 따른 요금변경 안내 ○ 2018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콜센터 운영안내 홍보
<p>환경미화팀 (☎ 560-813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분기 및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독려 ○ 불법소각 금지 및 단속강화 홍보 ○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반입 집중 단속 추진

【 총무팀 】

「해상자치권 확립」을 위한 고창군 해상경계 확정

❖ 불합리한 해상경계 주장



- ✓ 고창군과 부안군 해상경계가 위와 같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 ✓ 일부에서는 불합리한 위 해상경계가 맞다는 주장을 합니다.

- ☞ **부안군 주장**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의 해상경계가 불문법적 효력을 가진다.
- ☞ **(주)한국해상풍력**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전원개발사업 신청 시 부안군바다로 표기
- ☞ **산업통상자원부** : 심도있는 검토 없이 전원개발사업 승인('16.3.4.)

❖ 잘못된 주장과 불합리성

- ✓ 부안군과 (주)한국해상풍력, 그리고 산자부 주장의 판단기준은 모두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하며,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이미 부정되었습니다.

- ☞ 국토지리정보원 :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는 도서(섬)의 소속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표시한 것으로 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불인정
- ☞ 헌 법 재 판 소 : 2015년 판결을 통해 국가기본도의 불문법적 효력 불인정

- ✓ 또한 해상경계를 확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국내(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국제법적으로 두 당사자의 형평성 달성을 원칙으로 함.
- ☞ 해상경계 확정 시 상대방을 공해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은 채택할 수 없음.

❖ 우리군 입장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 ✓ 우리군에서는 불합리한 해상경계 인식을 일소하고, 우리군의 해상자치권을 확립하고자 합리적이고 명확한 해상경계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 ✓ 먼저, 우리나라는 바다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공유하는 자치단체간의 다툼의 원인이 되는데,
- ✓ 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의 해결방법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16. 8. 29.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 ✓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우리군의 주장은 부안군이 주장하는 해상경계는 불문법적 효력이 없으며 해상경계 확정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국제법적으로도 통용되는 기준인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 ✓ 또한 해상경계 획정을 통해 고창군이 관할하는 해양자원과 경제활동의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건설과 관련 사업대상해역의 직접당사자로서의 권리 확보
- ☞ 해양관광, 어업권 등 각종 해양자원의 권리 확보

- ✓ 현재 권한쟁의심판은 당사자 간 두 차례 서면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으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일정에 따라 변론 및 현장검증 등의 과정이 예상됩니다.
- ✓ 고창군민과 공직자 모두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창군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모두 한마음 한 뜻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추진현황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10km→30km)됨에 따라 방사능방재 대책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 원전 소재지에만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필요

* (납세지) 원전 소재지→원전 소재지+비상계획구역, (세율) 1원/kWh당→1.2원/kWh당

I 현 황

○ 한빛원전 현황

◆ 위 치 :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846

◆ 발전용량 및 원자로형 : 총 5,900MW(총 6기) / 가압 경수로형

※ 전국발전량의 8.7%(5,178억kWh), 호남권 전력소비량(622억kWh)의 78%(453억 kWh)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안전강화를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을 개정하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15. 5.18)

구 분	기 준	해 당 지 역
기 존	원전기점 10km이내	* 면적 69km ² , 인구 4,137명 - 고창군 3개면(상하해라공음면)만 해당
변 경 (확대)	원전기점 30km까지	* 면적 : 686km ² , 인구 68,338명 - 고창군 전체(성내면 제외) : 면적 576km ² , 인구 58,345명 - 부안군 5개면(변산진사위도보안출포) : 면적 110km ² , 인구 9,993명

○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현황

-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소 소재 시·도에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 '16년 한빛원전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액

구 분	전라남도(배분비율)	영광군(배분비율)
합 계	410억	
금 액	143억(35%)	267억(65%)

II

개정 필요성

1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 미이행(국비지원 전무)

- (주민불안감 증대) '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 내 주민들의 불안감 증대
- (국비지원 전무)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정부차원의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예산지원 등 후속조치 미이행

< 지방세법 부칙* (2014.12.31, 법률 제12954호) >

- ◇ 정부는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방사능 방재대책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 필요

- (방사능 방재대책 강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로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물품 확충, 구호소 지정·관리, 대피로 신설 등 방사능 방재대책 강화 필요
- (기 존) 면적 69km², 인구 4,137명 → (확 대) 면적 686km², 인구 66,391명
- (안정적인 재원확보) 비상계획구역 내 방사능 방재대책 추진에 매년 70억 이상의 예산소요가 예상되나, 원활한 방사능 방재대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3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방식 불합리

- (시설세 목적)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목적을 위해 과세되는 목적세이나, 현행 지방세법 상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만 부과 징수권이 있음(지방세법 제144조)
- (형평성 부합)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를 원전 주변지역 지자체가 함께 배분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적합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반영)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맞춰 방재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기준을 원전 소재지 뿐만 아니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인구·면적 비율로 조정 필요

Ⅲ

개정안 주요내용(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 ◇ (남 세 지) 원전 소재지 ⇒ 원전 소재지 + 비상계획구역 내 소재지
- ◇ (세 울) 1원(kWh당) ⇒ 1.2원(kWh당) * 1kWh당 0.2원 증액
-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 (배분기준) 원전 소재지 70% + 비상계획구역 내 소재지 30%(면적 15%, 인구 15%)
- ▣ 개정 시 전북 세입 증가 : 0원 ⇒ 73억원(2016년 한빛원전 남부액 기준)

Ⅳ

그간 추진상황

-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발의(김춘진 의원) : '14. 11. 13
 - 지방세법 부칙*을 근거로 정부의 예산지원방안, 지자체 예산소요 등 종합적 검토 후 심사할 대상으로 **안건 폐기**
- 중앙부처, 국회, 관계협의회 지속적 지방세법 개정 건의
 - 국회의원·전북도 정책협의회('15.7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15.10월), 행자부 지방세 제도개선('16.2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협의(김병관 의원, '16.3월~'17.2월)
- 개정안 발의를 위해 도내 출신 국회의원 방문 및 협조요청 : '17. 9. 8
-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발의(김병관 의원) : '17. 3. 31
- 지방세법 개정관련 국회 방문 : '17. 9. 8
 -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원실(소병훈, 김병관, 유민봉, 이명수, 홍철호)
- 행안부 지방세법 일부개정 개정안 검토의견 회신결과(신중검토) : '17. 9. 14
 - 관계부처(산업자원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전남, 경북, 부산) : **반대 의견**
-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지방세법 개정촉구건의안 발표 : '17. 9. 28
-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법안 심의 : '17.11. 28
 - 추계 예산 자료 보완 후 차기 소위에서 심의(2018년 2월중)
- 지방세법 개정관련 국회 요구자료 제출(비용추계) : '18. 1. 5.

Ⅳ

금후계획

- 법안심사 소위 대비하여 원전분야 지역자원시설 대응논리 개발 등 대응
-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법안 심의 : '18. 6월

□ 사랑의 그린PC 보급 신청 접수

- 보급대수 : 520대(도내 선착순)
- 접수기간 : 2018. 3. 19(월) ~ 3. 30(금)
- 보급사양 : 펜티엄Core2Duo이상(메모리 4GB, HDD 320G), 윈도우10, 한컴오피스2014, 알약, 19인치 LCD 모니터
- 무상수리 : 중고PC 보급·설치 후 1년 이내
- 유상수리 : 무상기간 이후 1년 이내(수리비 수급자 부담)
- 보급대상 : 전라북도 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 보급대상자 우선순위(기초생활수급자 우선보급)
 - 홈페이지(<http://lovepc.nia.or.kr>)에 등록된 순으로 우선 보급
 - 2017, 16년 보급자는 신청 제한 및 보급 대상자 제외
 - 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동일가구에서 중복신청 금지(1가구 1대 신청)
- 접수방법
 - ① 홈페이지(<http://lovepc.nia.or.kr>) 직접 접수(가장 빠름)
 - 붙임 참조 : 사랑의 그린PC 신청자 시스템 등록 방법
 - ②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신청서 제출 즉시 등록)
 -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 접수를 받아 홈페이지에 등록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법 준수

-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관련법조>>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이하생략)

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사직기한 : 2018. 3. 15.(목)까지(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및 사용안내

- 발 금 : 2월 1일 ~ 11월 30일 (사용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액사용)
- 충전 장소 : 읍사무소 총무팀 (문의 ☎ 560-8112)
- 충전 금액 : 7만원
- 사용 기 한 : 2018. 12. 31. 까지

※ 고창읍 가맹점 및 사용처 안내

- 시외버스, 석정온천, 알파문구, 각 서점, 작은 영화관, 각 문화행사 등

□ 마을변호사 제도 이용방법 안내

- 마을변호사 :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읍·면 지역)들도 각 마을에 배정된 마을 변호사에게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무료로 법률상담

읍면	지정변호사					
	성명	소속회	사무실	팩스	이메일주소	사무실
고창읍	김경선	전북	063-221-0215	063-228-0214	jinriroks@hanmail.net	전주
	노혜성	전북	063-632-3100	063-632-3190	comet463@gmail.com	남원
	황규표	전북	063-255-7100	063-255-7103	hgp5800@naver.com	전주

□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신고접수

- 목 적 :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미신고자 유족에 대한 현황 파악 등을 위함

유족회의 요청으로 인한 협조 차원의 신고접수로, 민간인희생자 접수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과는 관계없음.

- 신고기간 : 2017. 11. 28. ~ 2018. 5. 31.까지
- 신고 처 : 읍·면·동사무소
- 신고대상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 신고자격 : 희생자의 유족, 목격자 등 희생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이 접수 장소에 직접(또는 대리인)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 신고인, 희생자 성명, 생년월일, 희생 당시 나이·거주지·직업, 성별, 가족사항 등 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홍보

- 기 간 : 2018. 3. 31까지
- 체 납 액 : 392,985천원 4,220건
- 내 용
 - 종합행정담당마을별 체납지방세 총력징수
 -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관영치 수시단속(군 재무과)
 - 관내.외 고액고질체납자 징수독려 출장
 - 고질체납자 행정처분강화(압류,결손처분 등)

※ 협조사항 : 담당직원별 기 배부한 마을별 체납내역 참고하여 담당직원과 합동징수 부탁

□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 신청대상 : 정기분 지방세
 - 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 신청제외대상 : 정기분 지방세가 아닌 수시분 지방세
- 신청방법 : 읍사무소에 자동이체 신청서 제출(전화신청 가능)

<자동이체시 좋은 점>

- 영수증 보관 및 금융기관 방문 불필요(납기 마감일 이체)
 - 자신도 모르게 납기가 지나 미납으로 인한 체납방지
 - 납기일 경과에 따른 가산금 손해 방지
 - 자동이체 고지서 별도 발송으로 부과내용 확인
- ※ 지방세 납부가 편리한 자동이체 납부를 많은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세무상담 희망자(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위주)
- 마을세무사 : 전주시 김재근 세무사
- 내 용 :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 등
- 방 법 : 전화상담(사무실 ☎251-1593 H·P : 010-8601-7588)
-전화상담 위주이며 방문상담은 추후 일정 통보 예정임

□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및 홍보물 배부

- 기 간 : 2018. 4. 1 ~ 4. 30(1개월간)
 - 대 상 : 2017년 12월말 결산 법인
 - 내 용 : 2017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
 - 방 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방문(우편)신고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물 마을별2부(별첨)



생활 속 세금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마을세무사를 통한 세금고민 해결법 4단계



2018년 주민정보화교육 일정

- 장 소 : 고창군 여성회관 컴퓨터교육실(고창읍 월곡공원1길 36)1층
- 시 간 : 평일 09:30~12:30 (과정별 시간 참고)
- 정 원 : 과정별 24명(선착순)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고창군 홈페이지), 전화접수(☎ 560-2336)

월별	회차	교육신청	교육일정	시간(일수)	교육과정
2월	1	1.22. ~ 2. 2.	2. 5. ~ 2. 9.	09:30~12:30	컴퓨터&인터넷 (기초)
	2	1.29. ~ 2. 9.	2.19. ~ 2.23.	09:30~12:30	스마트폰 (기초)
3월	3	2.19. ~ 3. 2.	3. 5. ~ 3. 9.	09:30~12:30	한글 2010 (기초)
	4	2.26. ~ 3. 9.	3.12. ~ 3.16.	09:30~12:30	파워포인트 2010 (기초)
	5	3. 5. ~ 3.16.	3.19. ~ 3.30.	09:30~12:30	엑셀 2010 (기초)
4월	6	3.19. ~ 3.30.	4. 2. ~ 4. 5.	09:30~12:00	힐링이되는 사진편집
	7	3.26. ~ 4. 6.	4. 9. ~ 4.12.	09:30~12:00	블로그&카페 만들기
	8	4. 2. ~ 4.13.	4.16. ~ 4.19.	09:30~12:00	트위터&페이스북
	9	4. 9. ~ 4.20.	4.23. ~ 4.26.	09:30~12:00	컴퓨터 활용(활용)
5월	10	4.16. ~ 4.27.	4.30. ~ 5. 3.	09:30~12:00	인터넷 활용(활용)
	11	4.23. ~ 5. 4.	5.14. ~ 5.18.	09:30~12:30	한글 2010 (활용)
	12	5.14. ~ 5.25.	5.28. ~ 6. 1.	09:30~12:30	파워포인트 2010 (활용)
6월	13	6. 4. ~ 6.15.	6.18. ~ 6.29.	09:30~12:30	엑셀 2010 (활용)
7월	14	6.18. ~ 6.29.	7. 2. ~ 7. 6.	09:30~12:30	ITQ 한글
	15	6.25. ~ 7. 6.	7. 9. ~ 7.13.	09:30~12:30	ITQ 파워포인트
	16	7. 2. ~ 7.13.	7.16. ~ 7.27.	09:30~12:30	ITQ 엑셀
9월	17	8.20. ~ 8.31.	9. 3. ~ 9. 7.	09:30~12:30	컴퓨터&인터넷 (기초)
	18	8.27. ~ 9. 7.	9.10. ~ 9.14.	09:30~12:00	스마트폰 (활용)
	19	9. 3. ~ 9.14.	9.17. ~ 9.20.	09:30~12:00	힐링이되는 사진편집
10월	20	10. 1. ~ 10.12.	10.15. ~ 10.18.	09:30~12:00	블로그&카페 만들기
	21	10. 8. ~ 10.19.	10.22. ~ 10.26.	09:30~12:30	생활속 영상편집
	22	10.15. ~ 10.26.	10.29. ~ 11. 2.	09:30~12:30	한글 2010 (기초)
11월	23	10.22. ~ 11. 2.	11. 5. ~ 11. 9.	09:30~12:30	파워포인트 2010 (기초)
	24	10.29. ~ 11. 9.	11.12. ~ 11.23.	09:30~12:30	엑셀 2010 (기초)
	25	11.12. ~ 11.23.	11.26. ~ 11.30.	09:30~12:30	실무 엑셀 2010

※ 교육장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 및 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 ITQ(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 : 한국생산성본부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

【주민복지팀】

□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홍보

- 신청기간 : 사망 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사망자 또는 연고자의 주민등록지
- 신청대상
 - 사망일 현재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고창군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지원금액 : 시신 7만원, 개장유골 3만원
- 별첨 : 서남권 추모공원 이용 안내문 1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신청 희망 월 1일~10일
- 대상 : 기초수급자 및 법적 차상위계층
- 신청수량 : 1인당 월 10kg 1포 이내 신청 가능

(단위:원)

구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신곡 (‘17년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600	14,94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540	8,340
	2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200	29,51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2,710	16,300

- 신청방법 : 읍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입금전표 수령 후 농협 은행 납부
- 지원방법 : 매달 말 주민등록 주소로 배달

서남권 추모공원 이용 안내

□ 서남권 추모공원 :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90-2번지일원



- 시설현황
 - 화장장 2,400㎡ (화장로 3기+예비 2기)
 - 봉안당 550㎡ (3,870기)
 - 자연장 22,230㎡ (4,000기)
- 시설문의 및 안내
(안내대표) ☎ 539-6731
☎ 539-6723, 539-6725

□ 화장예약 : 먼저 화장예약부터(인터넷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예약신청 : e하늘장사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 인터넷 신청
- 문의사항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1577-4129

□ 이용안내

- 화장을 하는 경우 관내지역(정읍시·고창군·부안군)에 해당하는 경우
 - 대인·소인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의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
- 화장신고시 구비서류(원본 지참)
 - 병사 및 자연사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묘지소재지 관할 읍. 면사무소 신청.발급)

□ 사용료: 고창군민은 『화장장』 관내요금 적용 /타 지역에 비해 사용료 절감

시설별	구 분	사 용 료(원)		
		관내지역	도내지역	관외지역
화장장	만 15세 이상(1구)	70,000	300,000	500,000
	만 15세 미만(1구)	45,000	150,000	300,000
	사산아(1구)	20,000	70,000	150,000
	개장유골(1구)	30,000	150,000	300,000

【 맞춤형복지팀 】

□ 찾아가는 행복 상담실 운영 협조

- 기 간 : 연중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4:00 ~ 17:00
- 대 상 : 복지상담이 필요한 마을주민 누구나
- 운영장소 :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인구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 경로당, 마을모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시장 등
- 내 용 : 5인 1개팀 구성 현지 출장하여 종합 복지상담 및 신청접수
 - 상담원 구성 : 읍장(부읍장), 맞춤형 복지팀장 및 팀원, 방문간호사
- 협조사항 : 마을별 희망일자 추천 및 주민 참여 홍보 등

□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및 추천

- 기 간 : 연중.
- 대 상 :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
 - 1인가구, 독거노인 및 이웃관계 단절세대 등
-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 지원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 1인기준 528천원 3개월간 지원
 - 복지대상자 조사 선정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전기장판, 이불 등(지원 대상자 맞춤형복지팀 신청)

□ 고창읍복지허브화 활성화를 위한 연합모금 참여 협조

- 기 간 : 연중
- 모금대상 : 지역주민 및 기업, 단체, 개인 사업체 등
- 배분대상 : 고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창읍 저소득 세대 등
- 기부프로그램 : 정기기부(착한가게, 착한가정, 1인1계좌),
일시기부(지정기탁)
- 내 용 : 고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후원자 개발, 모금된
성금으로 고창읍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제공
 - 착한가게, 가정 가입 인증현판 지원, 법정기부금 혜택 및 연말정산자동 등록 등
- 문 의 처 : 고창읍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560-8104, 8114)
 - (정기)지정기탁 신청서 1부

기부 프로그램

정기기부-착한가게

-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
- 3만원 이상, 일정액을 매월 기부
- ‘착한가게 인증현판’ 제공



정기기부-착한가정

- 가족구성원 전체가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정
- 가족구성원이 함께 2만원 이상, 일정액을 매월 기부
- ‘착한가정 인증액자’ 제공



정기기부-1인 1계좌 갖기

-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달에 한번 커피 한잔, 한끼의 식사 값을 기부
- 한달에 한번 일정액을 지속적으로 기부
-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행 및 세제혜택

일시기부

- 우리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기부에 참여
-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행 및 세제혜택

[착한가게/가정 인증 액자, 현판]



고창군 고창읍 복지허브화 지정기탁신청서

기부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5의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 2항 (영수증발행)		
주 소		대표자성명 (법인인 경우)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지정내용	고창군 고창읍 복지허브화 사업		
기부금액	원 (₩)		
공동모금회 입금 계좌	<input type="checkbox"/>	농 협 508-01-042675	예금주:전북공동모금회
	<input type="checkbox"/>	전북은행 505-13-0311109	
입금자명		입금예정일	
본사(본인)는 위와 같이 기부금을 지정기탁하고자 신청하며, 기부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귀회 회규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일반성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기부자(명칭/성명)			(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모금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기부자는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 · 처리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의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모금회에서 수행하는 아래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제공이 불가합니다.			
가.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나.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제공, 다.정기기부금의 CMS(금융결제원)연계 출금처리			
1. 본인은 모금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 : 모금회 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모금회에서 처리하는 기부금관련 업무(발급 · 기부내역제공 등) 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항목 : 개인정보 등(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전자메일주소, 계좌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주민등록번호 : 기부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실시되는 기간동안 , 2.기타 : 모금회가 정한 보존기간동안			
2. 본인은 모금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 기부금의 자동 출금을 위한 금융결제원, 기부내역의 소득공제 확인을 위한 국세청 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이용 목적 : 정기기부금의 출금 및 기부금 소득공제 근거자료 활용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주민등록번호 : 기부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실시되는 기간동안 , 기타 : 모금회가 정한 보존기간동안 안3. 본인은 위 1~2호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 , 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모금회가 처리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 다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 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명칭/성명)			(인)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산업경제팀】

□ '18년 쌀·밭 직불제 신청 접수

- 신청기한 : 2018. 4. 20.(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밭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논·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제외대상

- 2017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등록신청제한 기간 중인 자

※ 전년과 달라진 사항

- 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 동일 계좌 확인
- 임대농지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임대차 갱신농지 포함)

▶ 쌀소득보전직불금

- 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단가 : 평균 100만원/ha
- 지급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 50ha

▶ 밭소득보전직불금

- 대상농지
 - 밭고정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재배하는 모든 품목이 지급대상, 신청 연도에는 휴경 포함)
 - 논이모작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 지급단가 : 밭고정직불금 평균 45만원/ha, 논이모작직불금 : 50만원/ha
- 지급상한면적 :
 - 밭고정 :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 논이모작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18. 1. 22.(월) ~ 4. 20.(금)
- 사업대상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에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농업인(2018~2019 한시사업)
- 지원한도 : 작물별 차등지원(다년생 작물은 1년차만 지원)
 - 조사료 400원/m², 두류 280원/m², 일반작물 340원/m²
- 지급시기 : '18. 11월(농산물품질관리원 약정 이행점검 후 지급)
- 제외작물 및 농지

제외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제외농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관보전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1,000m²이상 필지단위로 신청(상한면적 없음)

□ 봄철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방송 추진 협조

- 산불취약기간 : 2018. 2. 12. ~ 5. 15.
- 중점 추진사항
 - 취약지 인접(산림연접지 100m이내) 농산폐기물 소각 절대금지
 - 3대산불 중점관리(오후5시이후 산불, 동시다발산불, 재발화 산불)
 - 산불 발생시 행정기관 즉시 신고로 초등 진화토록 주민 홍보
 - 마을이장 및 담당직원이 마을 산불계도방송 실시(하루3회이상)
- 협조사항 : 산불예방 안내 및 마을방송(일3회) 홍보<붙임>
 - ※ 산불신고 : 읍사무소(560-8127), 산림공원과(560-2603)
- 산불방지 휴대폰 통화연결음(비즈링)가입 신청
 - <http://www.4pns.com/bizring/forest>(접속신청)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 2018. 3. 30(금)까지
 - ※ 카드발급 : 4월말(신청자격 등 심사 후 대상자 확정)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
 - ※ 만25세 이상 ~ 만70세 미만(1949.1.1. ~ 1993.12.31.)
 - 단, 결혼한 만20세 이상 ~ 만24세(1994.1.1. ~ 1998.12.31.) 여성농업인은 신청 가능
 -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농가
- 제외대상 :
 - 17.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농지원부)등록 농어가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 종사자 등
 - 문화누리카드, 공무원·공공기업(배우자에 한함)복지카드 중복 수혜자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 1인 연간 지원액 : 12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
-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사본 지참 후 신청서 작성(읍사무소 비치)

□ 제15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홍보

- 기 간 : 2018. 4. 21.(토) ~ 5. 13.(일) / 23일간
 - ※ 기 념 식 : 2018. 4. 21(토) 14:00
- 장 소 :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
- 주최/주관 : 고창군 /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
- 내 용 : 개막행사, 공연문화행사, 체험행사, 상설전시, 부대행사, 연계행사

□ 2018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홍보

○ 신청기간 : 2018. 3. 1. ~ 3. 31.

○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임야 등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업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논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 밭 : 유기 1,300천원/ha(채소·특작·기타), 1,400천원/ha(과수)

무농약 1,100천원/ha((채소·특작·기타), 1,200천원/ha(과수)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 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인증종류(유기·무농약)에 따라 총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 추가
2년(2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무기한 지급

※ 단, 유기지속 : 유기단가의 50% 지원

□ 2018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홍보

- 신청기간 : 2018. 9. 21(금). 한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친환경농산물(축산물제외)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생산자 단체(작목반, 법인)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2017. 10. 1. ~ 2018. 9. 30. 기간에 신규 또는 연장(갱신) 인증을 받은 자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 단, 2017년에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2017년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2018년도 신청을 받아 지원 가능
 - 사업기간 중 인증 취소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18. 10월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단체)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사업신청 및 지원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중 세부항목별 한도금액 기준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 지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세부항목별 영수증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 안내

- 2019년 들녘경영체육성사업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 신청기한 : 2017. 4. 2.까지
 - ※ 들녘경영체 인정기준
 -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육묘에서 수확까지 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농업경영체

□ 2018년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8. 2. ~ 2018. 11. 30.
- 신청서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로서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분석일) : 2017. 12. 1. ~ 2018. 11. 30.(1년)
- 지원 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타 국가기관 또는 고창군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지원 제한
 -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
- GAP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2018년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홍보

- 사업기간 : 2017. 10. 1. ~ 2018. 9. 30. 기간에 가입한 자
- 총사업량 : 8,000건
- 총사업비 : 2,300,000천원(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중 자부담액 일부 지원
- 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종합보험 가입요건 충족자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지역농축협

□ 2019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 신청기간 : 2018. 3. 30까지
- 사업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재배 희망농가
 - ※ 우선지원
 -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우수
 - 발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 ※ 지원제외
 - 최근 3년 이내 고창군 농업진흥과 보조사업포기자
 - 사업장 부지 미확보, 경사 및 농작물 재배중인 사업장 등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비 기준단가 : '18년 기준 20,000원/m²(단동) ※단, 변동 가능
- 농가단위 지원면적 : 최소 660m² 이상

□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8. 1. 1. ~ 12. 31. (1년간 한시지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업체도 지원가능
 - ※ 제외대상 :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지원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지원
-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2018년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홍보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림축수산업 등에 1년이상 종사한 자 및 귀농자
 ※ 용자금을 상환중인 자와 보증인은 신청불가
- 지원조건
 - 용자한도 · 일반농가 : 20백만원(경제작물 등 소득사업)
 - 귀 농 자 : 50백만원(농지구입자금)
 - ※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 소득사업 20백만원 신청가능
 단, 농지구입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읍면 대상자 신청접수 : 매월 20일한
- 농협 신용조회 : 매월 25일한
- 대상자 선정 및 용자실시 : 매월 30일한
- 대출금리

사업유형	담보물건	금리(%)	농가부담(%)	이자보전금(%)
소득사업 (1년거치2년상환)	농신보	5.00	1	4.00
	부동산	5.25	1	4.25
농지구입자금 (3년거치5년상환)	부동산	5.50	1	4.50

□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홍보

- 기 간 : 상황종료시까지
- 대 상 : 축산농가(가금농가)
 - 모든 축산농가에 대하여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 농장 주변 사료잔존물, 철새분변 제거 및 청소·소독 철저
 - AI 발생상황 안정화될 때까지 가금농가들이 집회, 모임 자제
 - 축산농장에 가축, 사람, 차량 등 출입 시 소독 및 기록철저
- 내 용 : AI의심증상 보일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1588-4060, 9060)

□ 2017년 쌀·밭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안내

- 기 간 : 2017. 12. 27. ~ 2018년 직불금 지급전까지
- 대 상 : 2017년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수령자
- 열람방법 : 군 홈페이지를 통한 성명/필지별 열람
 ※ 붙임 열람절차 참고

□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안내

- 신청대상 :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서 전, 답, 과수원 등으로만 이용 또는 관리하였던 임야(2013. 1. 20일 이전 전용산지)
- 신청기간 : 2017. 6. 3 ~ 2018. 6. 2(1년간)
- 신청자격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기타법인, 종중, 마을회 등은 불가)
 - 본인 소유 필지만 신청 가능 (연명되어 있는 필지 불가)
- 접수 및 문의 : 고창군청 산림공원과(4층) (☎ 063-560-2601)

□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기간 운영 안내 및 홍보 협조

- 내 용 :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른 악용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집중 단속 계획
- 신고기간 : 2018. 2. 1. ~ 4. 30.(3개월간)
- 신고방법
 - 전화 : 1332(금감원), 112(경찰청), 1372(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
 - 인터넷 ·금감원 : 홈페이지 신고코너(www.fss.or.kr)
·경찰청 : 홈페이지 (cyber112.police.go.kr)
 - 앱 :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 '불법사금융 제보·신고 클릭'
 - 대면 :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 지구대·파출소 등
- 신고내용
 -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채권 추심
 - 불법 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및 관련법 위법행위 등

□ 육묘업 등록제 홍보

※ 붙임 참고

□ 농기계 안전관리 요령 홍보

※ 붙임 참고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홍보안

□ 신청대상

-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서 전, 답, 과수원으로만 이용하였거나 또는 관리하였던 임야 (2013. 1. 20일 이전 전용산지)

□ 신청기간

- 2017. 06. 03 ~ 2018. 06. 02(1년간)

□ 신청자격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기타법인, 중증, 마을회 등은 불가)
- 본인 소유 필지만 신청 가능 (연명되어 있는 필지 불가)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제실 등 건축부지
- 임산물 재배지(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토지이용계획서 용도구역 “란” 표시된 산지 중
 - 공익용산지 : **절대불가**
 - 임업용산지 : 신청일 현재 기준 7년 이내 불법전용산지 **사건처리** 후 양성화
 - 준보전산지 : 신청일 현재 기준 5년 이내 불법전용산지 **사건처리** 후 양성화

□ 신청서류

-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 측량 성과도(신청지번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 신청 모두 해당)
※ 측량 비용 문의 : 종합민원과 ☎ 행 2857, 일반 063-563-1710)
- 산지이용확인서(신청필지 해당마을의 이장을 포함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인 확인 날인 - 5년 이상 거주 확인을 위한 주민초본 첨부)
-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산림조합 또는 설계사무소)
- 토지이동 신청서

□ 접수 및 문의

- 고창군청 산림공원과(4층) ☎ 063-560-2601

농지 임대수탁사업 신청안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임대 및 사용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의무가 주어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처분시까지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위탁하여 계약체결시에는 그 계약 기간동안 직접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 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처분명령제도

- ▷ 근거법령: 농지법 제10조 제1항(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 ▷ 농지이용실태조사: 매년 9월 1일~11월 30까지 농지의 자경, 임대 등 경작현황조사
- ▷ **농지처분명령** : 정당한 사유(질병, 부상, 군입대 등)없이 농지를 자경하지 않을 경우
- ▷ **이행강제금부과** :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기한내 처분하지 않은 자
 - ※ 이행강제금 : 당해농지 개별공시지가의 20% (처분시까지 매년 부과)

■ 농지임대위탁사업 [한국농어촌공사]

- ▶ 사업내용 :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의 농지를 공사에 임대하여 영농희망자(최소 5년이상)가 장기임차를
- ▶ 법적근거 : 농지법 제6조(농지소유제한), 7조(농지소유상환), 23조(농지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 대상농지 : 1996년 이후 매매·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전·답·과수원 단, 상속농지는 10,000㎡까지 임대 및 사용대차 허용(초과면적은 농지법 적용 대상)
- ▶ 제외농지 : ① 처분명령 받은 농지 및 1,000㎡미만의 소규모 농지
②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 및 각종 개발계획구역내의 농지
- ▶ 임대수탁사업(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장점
 - ① 농지 양도시(팔 경우) 양도세 감면
 - 농지양도시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일반과세율 적용 (6~38%)
 - ②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명령을 받지 않음



사업상담 : ☎(063) 560-1556. 560-1511

야생조류 관련 농가 시 차단방역요령

- ①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축사 주위에 생석회 도포
 - * 매일 아침 작업 전에 반드시 농장 주변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하고, 분변 위에 소독액을 뿌린 후에 제거
- ② 농장 내 축사별 소독조 설치·운영 및 축사별 전용장화 비치·착용
- ③ 농장경계, 축사, 사료보관시설에 울타리를 치고 그물망 설치
 - * 계분벨트, 팬 공간, 배수로, 전기시설 등을 통해 야생동물이 출입하지 않도록 시설 보완하고 설치한 그물망을 점검하여 필요 시 보수
- ④ 축사·왕겨창고, 퇴비사 등에 야생조류·야생동물이 드나들지 않도록 문단속 등 유입 차단 철저
- ⑤ 야생조류가 축사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축사 문단속 철저
- ⑥ 쥐 등 야생동물이 철새 분변을 묻혀 AI 원인체를 유입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구서작업 및 야생동물 유입 차단 실시
 - * 쥐 등 야생동물이 야생조류 분변접촉을 통해 AI 바이러스 전파 가능
- ⑦ 외부인 및 외부차량의 농장출입을 최대한 통제 및 세척·소독 철저
 - * 사람이나 사료차량 등이 농장 출입 시에는 차량 및 개인소독 철저
- ⑧ 농장 내 야생조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사료·왕겨를 두지 않도록 하고 농장 주변에 잔목·잡초를 제거하는 등 청결 유지
- ⑨ 철새도래지 및 야생조류가 출몰하는 논·밭·저수지 등 인근지역 출입 자제
- ⑩ 축주·종사자의 경작지 방문한 후 농장 복귀 시, 작업복 교체, 착용 신발·세척·소독 및 세안·손씻기 철저

마을방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내 육용오리 농가 및 전북 정읍, 전남,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산란계농가까지 발생되어 수평 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오리 및 산란계 농가의 특별 방역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및 행정조치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종식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가금사육농가 방문 금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계란구입을 위한 산란계농가 방문을 절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금사육 농가께서는 모임(행사) 참석 금지와 차량 출입구에 차량 소독 시설 설치,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 등에 대한 통제 소독 및 유효 소독제 사용,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비치, 야생 동물 차단을 위한 울타리 그물망 설치, 축사 출입구에 전용 장화와 발판소독조 설치 운영 등으로 AI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에 종식 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1~2회 반복)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직불금 정보공개 및 열람절차

(1) 농림축산부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 접속



-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불금 정보공개 배너 **1** 클릭

(2) 실명인증 및 열람목적 기재



- 실명확인 및 열람 목적을 기재하고 **2** 열람신청 버튼 클릭

※ 무단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확인이 안될 경우 정보조회 불가

(3) 정보열람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정보열람 - Windows Internet Explorer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정보열람

이름으로검색 농지주소로검색 (※ 실지급금액을 조회하실 경우에는 이름으로검색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시 : 군 : 읍면 : * (시도/시군), 이름은 필수항목입니다.

이름 : **3** 열람

4

성명	고정			변동		
	지급대상면적 (㎡)	지급대상금액 (원)	지급금액 (원)	지급대상면적 (㎡)	지급대상금액 (원)	지급금액 (원)
해당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신청면적 : 신청서 신청당시의 면적
 - 선정면적 : 신청면적중 시군구/읍면동 담당자 확인후의 면적
 - 지급대상면적 : 선정면적중 이행점검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이행점검 부적격면적제외) 최종지급대상이 된 면적

검색하신 검색하신 ""에 대한 검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명	농지지번	고정			변동		
		신청면적 (㎡)	선정면적 (㎡)	지급대상면적 (㎡)	신청면적 (㎡)	선정면적 (㎡)	지급대상면적 (㎡)
해당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위 그림에서 시군과 읍면을 선택하고, 조회할 이름을 선택한 후 **3** 번 “검색” 버튼을 누르면
 - 해당 조건에 따라 **4** 에 조회됩니다.
- ※ 농지주소로 검색시에는 주소와 필지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합니다.

산불예방 홍보 방송안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당부 말씀을 드리오니 ○○마을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취급을 하지 맙시다.
- ◆ 논·밭두렁 태울시 또는 쓰레기소각시 사전에 119에 신고합시다.
- ◆ 산에 갈 때는 성냥 라이터 등 불을 낼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지 맙시다.
또한 산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 ◆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절대 들어가지 맙시다.
- ◆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나 읍사무소, 군청산림공원과에 신고합시다.
- ◆ 주민 여러분의 조그만 주의와 관심으로 산불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실천하여 소중한 산림을 우리가 지킵시다.
- ◆ 이상 ○○마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산불관련 처벌 규정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의 징역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처벌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위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 제1호	10	10	10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 제2호	30	40	50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 제2호	10	20	30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이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 제1호	10	20	20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 제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 제3호	10	20	20

육묘업 등록 관련 안내문

1. 육묘업 등록

- 묘(모종)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육묘업의 등록 대상은 채소, 식량, 화훼작물입니다.
- 육묘업 등록은 일정한 시설을 충족하고 전문기관에서 16시간 교육이수 후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묘업의 시설기준

1. 공통기준

-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면적은 최대기준을 적용할 것

2. 개별기준

가. 채소작물, 화훼작물

시설	1) 철재하우스 면적 : 99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 환풍기, 난방기, 관수장치를 갖출 것 3) 병해충 차단시설 : 방충망을 갖출 것 4) 토양으로부터 바닥 격리시설 : 육묘벤치(필수), 콘크리트 타설, 부직포 피복, 자갈 포설 및 보도블록 중 2개를 갖출 것
----	---

나. 식량작물

시설	1) 철재 하우스 면적 : 25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 차광장치, 관수장치를 갖출 것 3) 토양으로부터 바닥 격리시설 : 육묘벤치, 콘크리트 타설, 부직포 피복, 자갈 포설 및 보도블록 중 1개를 갖출 것
----	---

전문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등)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는 육묘업 등록이 의무가 아니나, 유통묘 품질표시와 관련 장부 보관은 의무임

《 주 요 내 용 》

육묘업 등록제 시행

('17.12.28 시행)

<p>현행</p>  <p>등록 필요없음</p>	<p>개정 후</p>  <p>육묘업 등록 필요</p>
--	--

❶ 사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❷ 전문인력양성 기관으로부터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 (준비행위기간) '17. 6. 28 ~ 12. 27
 * 육묘업 등록교육 과정 사전수요조사 및 교육신청(7~9월)
 - 교육기간/장소(안): 10월하순~11월 하순 (2일간), 서울대학교

유등 묘 품질표시 의무화

('17.12.28 시행)

<p>현행</p>  <p>표시의무 없음</p>	<p>개정 후</p>  <p>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 표시</p>
--	---

분쟁조정대상 묘 포함

('17.12.28 시행)

<p>현행</p> <p>대상: 종자</p>	<p>개정 후</p> <p>대상: 종자, 묘</p>
---------------------------------------	--

묘 결함으로 인한 농가와 업체간의 분쟁조정 가능

종자검정업무 이관 및 보급중생산대행 자격 확대

('17. 6. 28 시행)

현행	개정 후
<div style="background-color: #e69d00;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종자검정</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69d00;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보급중 생산대행</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ce4d6; padding: 5px; margin-bottom: 5px;">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ce4d6; padding: 5px; margin-bottom: 5px;">국립종자원</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p>농업인</p> <p>농업 경영체 (농업인+농업법인)</p>

농기계 안전관리 요령

● 농기계 보관창고는 항상 밝고 깨끗하게 정돈하자



- ▶ 출입구의 폭, 높이는 여유 있게 합시다.
- ▶ 내부는 충분한 밝기와 환기가 되도록 합시다.
- ▶ 농기계 및 공구는 정해진 장소에 정리정돈하여 둡시다.
- ▶ 어린이가 출입하지 않도록 자물쇠를 설치합시다.

● 농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를 착용하자



- ▶ 헐렁하거나 소매가 긴 옷은 입지 맙시다.
- ▶ 미끄럼 방지 처리된 안전화를 착용합시다.
- ▶ 긴 머리카락은 모자 속에 넣거나 묶읍시다.
- ▶ 보석류는 빼놓고 작업에 임합시다.

● 농작업 전·후에는 반드시 농기계 점검정비를 하자



- ▶ 점검·정비시에는 반드시 엔진이나 전원을 차단합시다.
- ▶ 이상 발견시에는 정비할 때까지 사용하지 맙시다.
- ▶ 정기교환 부품은 시기에 맞추어 교환합시다.
- ▶ 안전장치는 제 위치에 부착하고 떼어내지 맙시다.

● **논·밭 출입은 안전한 방법으로 하자!**



- ▶ 출입로는 완만한 경사와 적절한 폭을 유지합시다.
- ▶ 이동시에는 속도를 낮추고, 후방 작업기가 무거울 경우 앞쪽에 밸런스웨이트를 장착합시다.
- ▶ 논둑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진행합시다.

● **동승자를 태우지 말자!**



- ▶ 동승자는 운전자의 시야 또는 레버조작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 ▶ 동승자가 있을 경우 급정지·급회전시에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 **음주운전은 절대 않는다!**



-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파괴시키는 사고의 주범임을 명심합시다.
- ▶ 음주운전은 침착성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을 어렵게 하여 대형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자!



- ▶ 방향지시등, 후미등, 비상등, 야간반사판 등을 반드시 부착합니다.
- ▶ 등화장치의 작동상태는 수시로 점검하고 무농작업 후에는 반드시 청소합니다.
- ▶ 트레일러에 짐을 실을 때는 뒤에 오는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볼 수 있도록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습니다.
- ▶ 야간 또는 악천후에는 반드시 등화장치를 작동하고 감속하여 운전합니다.

● 경운기·관리기



- ▶ 이동시에는 작업기의 동력을 끄고 합시다.
- ▶ 회전부에 신체를 접촉하지 않습니다.
- ▶ 조향클러치는 저속주행 또는 논·밭에서 작업할 때만 사용합니다.
- ▶ 내리막 길에서 조향클러치는 평지와 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 ▶ 조향클러치는 짧게 여러번 조작하여 선회합니다.

● 트랙터



- ▶ 타고 내릴 때는 작업화의 진흙을 제거하고 승차용 계단과 손잡이를 이용합니다.
- ▶ 안전 캡 또는 프레임을 장착합니다.
- ▶ 도로 주행시에는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반드시 연결합니다.
- ▶ 경사지에서 등고선 방향으로 작업할 때는 하중이 큰 쪽을 위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 콤바인



- ▶ 콤바인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사다리 길이는 차량적재함 높이의 4배 정도 되게 하여 안전한 경사를 확보합니다.
- ▶ 막힌 짚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합니다.
- ▶ 체인, 양곡기 등에 쌓여 있는 검불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제거합니다.
- ▶ 논둑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운전합니다.

● 휴대형 예초기



- ▶ 작업 전에 병,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 ▶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합니다.
- ▶ 작업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고, 작업반경 15m 이내에는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제초날을 톱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설도시팀】

□ 고창군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에 따른 요금변경 안내

- 시행일 : 2018년 2월 1일(목) 00:00부터
- 요금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구 분	일 반	중.고생	초등생	구분	일 반	중·고생	초등생
기본구간	1,400	1,100	700	전구간	1,000	500	500
6km외 지역	km당 116.14원 적용						

- ※ 고창군 농어촌버스 운송업체를 제외한 고창 시내 외 지역은 변경 전 요금체계를 따름.
예)정읍시 농어촌버스 운송업체를 이용 고창→정읍 방면 및 정읍→고창 방면
이용 시 기존요금 3,300원 적용
- ※ 교통카드 사용 시 기존과 동일하게 50원 할인 : 일반 950원, 학생 450원
- ※ 상이군경(6급,7급) 30%할인 : 700원

□ 2018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 기 간 : 2018. 01. ~ 04.
- 대 상 : 내동진입로 배수로 정비 등 90건 (1,094백만원)
- 협조사항
 - 사업부지가 개인소유인 경우 토지 사용 승락서 제출
 - 현황측량 및 사업시행 시 주민협조 요망

□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콜센터 운영안내 홍보

- 운영시간 : 상시운영
- 위 치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고창읍 중거리 당산로 74-12)
- 전화번호 : 063-560-8985
- 처리민원
 - 원격검침 시스템 관련 전파 장치 파손 및 표시부 이동
 - 누수확인, 상수도 사용량 확인 등

【환경미화팀】

□ 2018년 1분기 및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독려

- 부과대상 : 경유사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적용기간 : 2017. 7. 1.~ 12. 31.
- 납부기한 : 2018. 3. 31.
- 협조사항 : 납기일 도래에 따른 주민 납부독려 및 마을방송 협조

□ 불법소각 금지 및 단속강화 홍보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폐기물의투기금지등)
 - 단속반 :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560-2876)
 - 협조사항 : 마을회관, 경로당 등 홍보문 게시 및 마을방송 협조
 - 폐비닐, 생활쓰레기, 고무, 동물사체 등 악취발생물질 노천 소각행위
민원 다수발생(국민신문고 접수 등)에 따른 단속강화 및 과태료 처분
 - 사업활동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100만원 과태료
 - 사업활동 외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50만원 과태료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반입 집중 단속 추진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사항
 -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 홍보내용
 - 음식물쓰레기와 비닐봉지 함께 배출 금지
 - ☞ 생활쓰레기는 음식물 및 재활용쓰레기와 구분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수거용기에 담아 물기제거 후 배출
 -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선별하여 지정된 날짜에 배출
 - 비닐봉지(과자, 라면 등 재활용 비닐포함)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대형폐기물(가구류, 문짝, 고무통 등) : 사전 신고 후 수거일(화,금)에 배출
 - 대형폐가전(냉장고, 컴퓨터, 에어컨, TV 등) 무상수거 요청 : 1599-0903
-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조)

『붙임1』

불법소각 금지 및 단속강화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560-2876)
- 중점 단속사항
 - 폐비닐, 쓰레기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악취 발생물질(고무, 합성수지, 동물사체 등) 노천소각 행위
 -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 단속 근거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속 조치사항
 - 사업활동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100만원 과태료
 - 사업활동 외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50만원 과태료

『붙임2』

쓰레기 분리배출 이렇게 하세요

- **배출시간 : 평일 저녁 8시 ~ 새벽 5시**[휴일배출 금지]
-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생활(일반)쓰레기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반드시 재활용품 및 음식물 분리배출
 -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혼합배출 시 단속
 - 검정비닐봉투 등에 배출 시 단속
 - 비닐봉지(과자, 라면 등 재활용 비닐포함)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담요, 이불, 베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헌옷은 지정 수거함에 배출
- **재활용품 배출요령**
 - 배출방법 : 투명 비닐봉지 또는 재활용 수거대에 배출
 - 캔, 유리병, 고철, 플라스틱, 종이팩 : 투명봉투에 담아서 배출
 - 스티로폼 · 신문 · 종이류 : 끈으로 묶어 배출
 - 폐형광등 · 폐건전지 · 폐휴대폰 : 지정 수거함에 배출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책상, 장롱 등 대형폐기물 : 고창읍사무소에 사전 신고(처리수수료부과) 후 배출
 - 폐기물 수거일 : 화, 금요일(☎560-8133)
 - 폐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TV 등) : 전문 무상수거업체에 사전 신고 후 배출
 - 무상수거업체 : 한국전자제품순환공조합(☎콜센터1599-0903)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 연중**
 - 분리수거 집중단속기간 : 2018. 1. 1. ~ 12. 31.
 - 과태료 처분 : 적발 시 최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